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환 경 영 향 평 가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024. 1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함.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울산항은 동북아 에너지 물류중심의 항만구현을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변화여건을 고려한 항만개발방향 정립, 항만시설 및 항만구역의 다목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금회 사업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2020, 해양수산부” 및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2019-2040), 2019, 해양수산부”에 부합된 울산 남신항 철재부두 개발계획을 시행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울산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원항만 등으로 기능전환을 통해 철재부두의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근의 부두개발 사업(목재부두 등)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해상풍력사업 지원항만으로 선개발을 통해 울산 주변지역(포항, 부산 등) 해상풍력사업 지원항만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울산항 주변 관련산업 유치 등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함.

나.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 사 업 의 종 류 : 항만의 건설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 승 인 기 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협 의 기 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사 업 의 내 용
 - 사 업 기 간 : 2025년 ~ 2028년(48개월)
 - 총 공 사 비 : 726억원
- 사 업 규 모
 - 계 류 시 설 : 290m
 - 공유수면 매립 : 74,600㎡

다.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 추진경위

- 1997.05. : 울산신항 개발
- 2011.07.29.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 고시
- 철재부두(3만 1선석, 240m) 최초 반영
- 2016.09.29.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6~2022) 수정계획 고시
- 철재부두(3만 1선석, 240m → 290m) 계획 변경
- 2019.08.02. :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고시
- 철재부두(3만 1선석, 290m)
- 2020.12.30. : 제4차 전국(2021~2030) 항만기본계획 고시
- 철재부두(3만 1선석, 290m)
- 2023.05. : 울산 남신항 철재부두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 2023.09.0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청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3659)
- 2023.09.1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지명 및 추천 요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3360)
- 2023.09.2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심의요청
*심의기간 : 2023.09.26.~2023.10.13.(18일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3529)
- 2023.10.2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3779)
- 2023.11.07.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개기간 : 2023.11.07.~2023.11.22.(16일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103호)
- 2024.03.1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 검토요청
*울주군(주관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광역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기술(환경분야) 자문위원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958, 989)
- 2024.03.2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공람장소 : 울주군청(환경자원과), 온산읍행정복지센터, 서생면행정복
지센터, 온양읍행정복지센터
*공람기간 : 2024.03.21.~2024.04.22.(22일간)

-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 2024.04.17.(수), 13:00, 진하1리마을회관
(울주군 공고 제2024-857호)
- 2024.04.17. : 주민설명회 개최 무산(사유: 지역주민의 주민설명회 청취거부)
- 2024.04.2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연장공고
*공람장소 : 울주군청(환경자원과), 온산읍행정복지센터, 서생면행정복지센터, 온양읍행정복지센터
*공람기간 : 2024.03.21.~2024.05.31.(49일간)
(울주군 공고 제2024-1176호)
- 2024.10.3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추가공람 및 주민설명회 재개최 공고
*공람장소 : 울주군청(환경기후과), 온산읍행정복지센터, 서생면행정복지센터, 온양읍행정복지센터
*공람기간 : 2024.10.31.~2024.11.08.(7일간)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 2024.11.07.(목), 14:00, 울주군청 1층 문수홀
(울주군 공고 제2024-2930호)
- 2024.11.07. : 주민설명회 개최

2) 향후계획

-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여부 공개(14일 이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고시 및 사업시행

라.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금회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의 “4. 항만의 건설” 나. 목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4. 항만의 건설공사	나. 「항만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금회	◦ 공유수면 매립면적 : 74,600㎡ > 3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2. 주민의견 수렴개요

가. 주민의견 수렴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9조에 따라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공고 후 시행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 또한,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주관기관(울주군청), 관할기관(울산광역시청), 협의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1) 주관 행정기관 : 울주군청

2) 신문공고

- 최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1차)를 하였으나, 주민 등의 설명청취 거부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공람기간 내 주민설명회 재개최를 위하여 공람기간 연장공고(2차)를 진행하였음.
- 그러나 공람기간 이후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하게 됨에 따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재개최 공고(3차)를 진행하였음.
- 공고번호 : (1차) 울주군 공고 제2024-857호
(2차) 울주군 공고 제2024-1176호
(3차) 울주군 공고 제2024-2930호
- 신문공고 : (1차) 2024년 3월 21일(목) : 경향신문(일간), 울산매일(지역)
(2차) 2024년 4월 22일(월) : 경향신문(일간), 울산매일(지역)
(3차) 2024년 10월 31일(목) : 경향신문(일간), 울산매일(지역)
- 공람기간 : (1차) 2024년 3월 21일 ~ 4월 22일(21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2차) 2024년 3월 21일 ~ 5월 31일(49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3차) 2024년 10월 31일 ~ 11월 8일(7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주민의견 제출기간 : (1차) 2024년 3월 21일 ~ 4월 29일(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차) 2024년 3월 21일 ~ 6월 7일(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3차) 2024년 10월 31일 ~ 11월 15일(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공람장소 : 울주군청 환경기후과, 온산읍·서생면·온양읍 행정복지센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주민의견서 제출여부 : 제출된 주민의견서 없음.

※ 정보통신망 공개(1차)(울주군청 홈페이지)

울주군청
소통군수실
울주군의회
울주문화관광
국가상징

글자크기 + -
언어선택 v

통합검색

Q

민원안내
정보공개
참여소통
열린군정
울주복지
분야별정보
울주군소개

열린군정

군정자료 v

재정정보 v

고시공고 ^

- 고시공고
- 일반공고
- 입찰공고
- 채용공고
- 입법예고
- 개인정보업무위탁
- 개인정보제3자제공
- 무연분묘개장공고

군정소식 v

일반공고

홈 > 열린군정 > 고시공고 > 일반공고
🖨️ 🔗

현재 페이지 1 / 전체 페이지 1472

제목

검색

번호	일반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147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7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129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	도로과	2024-03-21
147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857호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	환경자원과	2024-03-21
14710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84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한 열람공고(언양 동부주...	도로과	2024-03-21
1470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818호	공시송달 공고(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new	신성장개발과	2024-03-21
14708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833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온양 군도6호선(고산-회야댐) ...	도로과	2024-03-21

민원안내
정보공개
참여소통
열린군정
울주복지
분야별정보
울주군소개

열린군정

군정자료 v

재정정보 v

고시공고 ^

- 고시공고
- 일반공고
- 입찰공고
- 채용공고
- 입법예고
- 개인정보업무위탁
- 개인정보제3자제공
- 무연분묘개장공고

군정소식 v

일반공고

홈 > 열린군정 > 고시공고 > 일반공고
🖨️ 🔗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857호 | 등록일 : 2024-03-21 | 담당 부서 : 환경자원과
 담당자/연락처 : 신미리 / 052-204-2115

□ 사업개요
 ● 사업 명 :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해역 일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4년간)
 ● 시행 자 : 울산항만공사
 ● 사업내용
 계류시설 : 290m 공유수면 매립 : 74,600㎡

첨부 파일

· 공고문(안).hwp · 바로 보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제출서(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hwp · 바로 보기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pdf · 바로 보기

※ 정보통신망 공개(1차)(EIASS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EIASS

🔍

전략환경영향평가

바로가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바로가기

환경영향평가

바로가기

사후환경영향조사

바로가기

기후변화영향평가

바로가기

EIASS

초안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항만건설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 승인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공고일: 2024.03.21

📅 공람기간: 2024.03.21 ~ 2024.04.22

산업입지및산업단지외 조성

이진지구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 승인기관: 울산광역시

📅 공고일: 2024.03.19

📅 공람기간: 2024.03.19 ~ 2024.04.17

도로의 건설

합천 적중-장녕 유어 국도건설공사

📍 승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공고일: 2024.03.18

📅 공람기간: 2024.03.18 ~ 2024.04.16

도시의 개발

천안 신방구릉 도시개발사업

📍 승인기관: 천안시

📅 공고일: 2024.03.18

📅 공람기간: 2024.03.18 ~ 2024.04.15

국민참여

협약진행현황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평가서 초안 공람

행정처분현황

사용자지원

평가서 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

■ 사업개요

사업명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사업시행자	울산항만공사
사업구분	항만건설
사업구분에 대한 근거법령	항만시설 중 계류시설
사업지위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연차로 72) 당월리 서속해역 일원
승인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초안공람

주인의견수집

초안

- (초안) 0000 표지 및 목차.pdf
- (초안) 0100 요약문.pdf
- (초안) 0200 사업의 개요.pdf
- (초안) 0300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pdf
- (초안) 0400 지역개황.pdf
- (초안) 0500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pdf
- (초안) 0600 주민 등 의견수렴.pdf
- (초안) 0700 대안설정 및 평가.pdf
- (초안) 0800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pdf
- (초안) 0911 자연환경자산.pdf
- (초안) 0921 기상.pdf
- (초안) 0922 대기질.pdf
- (초안) 0923 온실가스.pdf
- (초안) 0931 수질.pdf
- (초안) 0932 1 해양동식물상.pdf
- (초안) 0932 2 해양물리.pdf

※ 정보통신망 공개(2차)(EIASS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사업명	울산 남산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사업시행자	울산항만공사
사업구분	항만건설
사업구분에 대한 근거법령	항만시설 중 계류시설
사업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연차로 72) 당벌리 서측해역 일원
승인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초안공람	주인의견수렴
------	--------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0000 표지 및 목차.pdf • (초안) 0100 요약문.pdf • (초안) 0200 사업의 개요.pdf • (초안) 0300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pdf • (초안) 0400 지역계획.pdf • (초안) 0500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pdf • (초안) 0600 주민 등 의견수렴.pdf • (초안) 0700 대안설정 및 평가.pdf • (초안) 0800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pdf • (초안) 0911 자연환경자산.pdf • (초안) 0921 기상.pdf • (초안) 0922 대기질.pdf • (초안) 0923 온실가스.pdf • (초안) 0931 수질.pdf • (초안) 0932 1 해양동식물상.pdf • (초안) 0932 2 해양물리.pdf • (초안) 0932 2 해양물리.pdf • (초안) 0932 3 해양수질 및 저질.pdf • (초안) 0941 토지이용.pdf • (초안) 0942 지형·지질.pdf • (초안) 0951 친환경적자원순환.pdf • (초안) 0952 소음진동.pdf • (초안) 0953 경관.pdf • (초안) 0961 산업.pdf • (초안) 1000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pdf • (초안) 1100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pdf • (초안) 120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pdf • (초안) 1300 종합평가 및 결론-항목별작성.pdf • (초안) 140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여부.pdf • (초안) 1500 부록.pdf
초안 공고일	2024.03.21
초안 공람 기간	2024.03.21 ~ 2024.05.31
공람 장소	울주군청(환경자원과) 온산읍행정복지센터 서생면행정복지센터 온양읍행정복지센터
설명회 장소	진하1리마을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루터길 29)
설명회 일시	2024년 4월 17일(수) 13:00
의견 제출 기한	2024.03.21 ~ 2024.06.07

※ 정보통신망 공개(3차)(울주군청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검색
▼

Q

민원안내
정보공개
참여소통
열린군정
울주복지
분야별정보
울주군소개

☰

열린군정

군정자료

재정정보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일반공고
- 입찰공고
- 채용공고
- 입법예고
- 개인정보 업무위탁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무연분묘 개장공고

군정소식

일반공고

홈 > 열린군정 > 고시공고 > 일반공고 📄 🔗

현재 페이지 1 / 전체 페이지 1596

제목
▼

검색

번호	일반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15960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2930호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추가공...	환경기후과	2024-10-31
15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2947호	공보게재 요청[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교육체육과	2024-10-31
15958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2915호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정자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new	농업정책과	2024-10-31
1595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2957호	공보게재 요청[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범서생활체육공원)사업 실시...	교육체육과	2024-10-31
1595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2916호	서생 농어촌도로 104호(위대선) 노선지정 공고 new	도로과	2024-10-31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검색
▼

Q

민원안내
정보공개
참여소통
열린군정
울주복지
분야별정보
울주군소개

☰

열린군정

군정자료

재정정보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일반공고
- 입찰공고
- 채용공고
- 입법예고
- 개인정보 업무위탁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무연분묘 개장공고

군정소식

일반공고

홈 > 열린군정 > 고시공고 > 일반공고 📄 🔗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추가공람 및 주민설명회 재개최 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4-2930호 | 등록일 : 2024-10-31 | 담당 부서 : 환경기후과

담당자/연락처 : 신미리 / 052-204-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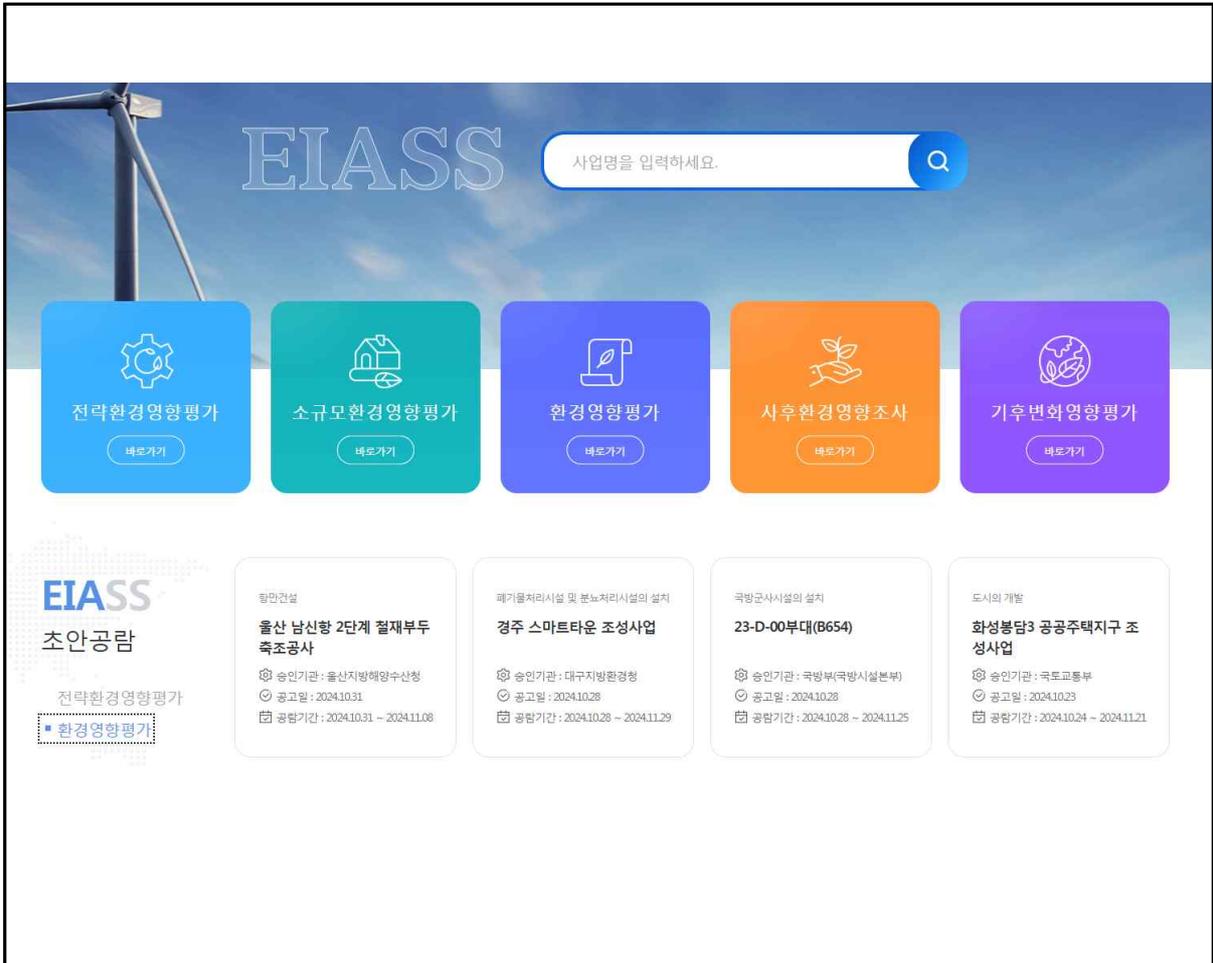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추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재개최 계획을 불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주민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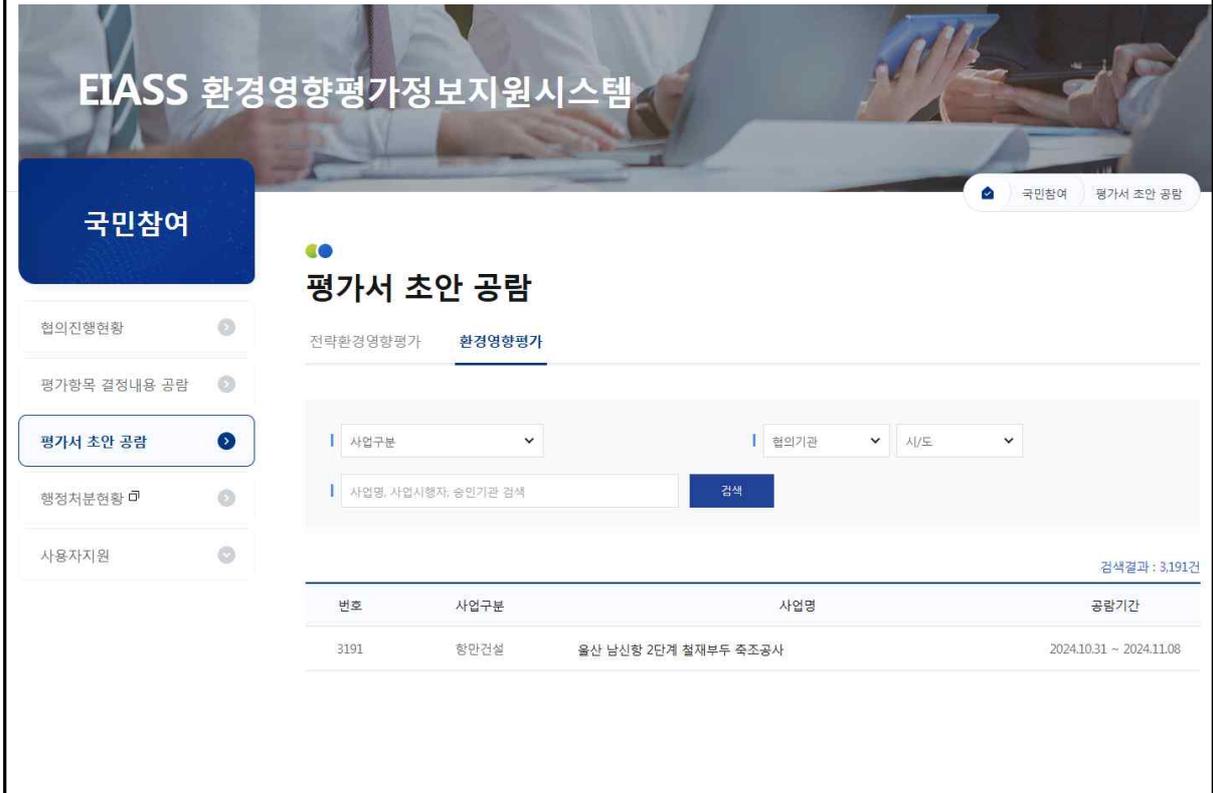
· 공고문(안) 추가공람 및 재개최.hwp · 바로 보기

※ 정보통신망 공개(3차)(EIASS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The home page features a header with the EIASS logo and a search bar. Below are five main service buttons: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시후환경영향조사, and 기후변화영향평가. A '초안공람' section highlights four projects with their respective details.

항만건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도시의 개발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경주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23-D-00부대(B654)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승인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일: 2024.10.31 공람기간: 2024.10.31 ~ 2024.11.08	승인기관: 대구지방환경청 공고일: 2024.10.28 공람기간: 2024.10.28 ~ 2024.11.29	승인기관: 국방부(국방시설본부) 공고일: 2024.10.28 공람기간: 2024.10.28 ~ 2024.11.25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공고일: 2024.10.23 공람기간: 2024.10.24 ~ 2024.11.21



The search interface includes a '국민참여' sidebar with navigation options like '협진현황',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평가서 초안 공람', '행정처분현황', and '사용자지원'. The main area shows search filters for '사업구분' and '협의기관' and a search button. Below is a table of search results.

번호	사업구분	사업명	공람기간
3191	항만건설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2024.10.31 ~ 2024.11.08

다. 주민설명회

1) 신문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에 포함하여 시행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 (1차) 2024년 4월 17(수요일), 13:00. 진하1리마을회관 : 무산
(2차) 2024년 11월 7일(수요일) 14:00, 울주군청 1층 문수홀

3) 주민설명회 참석자

- 16명(참석자 명부 기준)

※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2024년 11월 7일 14:00, 울주군청 1층 문수홀)



※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뚝조공사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개최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4:00	개최장소	울주군청 문수홀
사업자	울산항만공사		
No.	성명	주소	서명(날인)
1	김민		
2	김민		
3	김민		
4	김민		
5	김민		
6	김민		
7	김민		
8	김민		
9	김민		
10	김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뚝조공사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개최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4:00	개최장소	울주군청 문수홀
사업자	울산항만공사		
No.	성명	주소	서명(날인)
1	김민		
2	김민		
3	김민		
4	김민		
5	김민		
6	김민		
7	김민		
8	김민		
9	김민		
10	김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뚝조공사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개최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4:00	개최장소	울주군청 문수홀
사업자	울산항만공사		
No.	성명	주소	서명(날인)
1	김민		
2	김민		
3	김민		
4	김민		
5	김민		
6	김민		
7	김민		
8	김민		
9	김민		
10	김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뚝조공사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개최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4:00	개최장소	울주군청 문수홀
사업자	울산항만공사		
No.	성명	주소	서명(날인)
1	김민		
2	김민		
3	김민		
4	김민		
5	김민		
6	김민		
7	김민		
8	김민		
9	김민		
10	김민		

라. 주민의견 수렴결과

구 분	심 의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낙동강 유역환경청	<p>□ 총괄의견</p> <p>◦금회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신항 일원에 철재부두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아래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p>	<p>◦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p>	
	<p>□ 세부검토의견</p>		
	<p>1. 육상 동·식물상</p> <p>◦육상동·식물 현황조사 및 저감방안 수립</p> <p>-본 사업지는 동계 조류 동시세션스 지역에 해당(53, 146쪽)됨에도 불구하고 동·식물상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환경현황조사 결과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솔개(Ⅱ급)가 확인(146쪽)되었다는 단순 기술만 하고 있는 바, 주요 동·식물 법정보호종 및 장거리 이동성 조류 등의 현황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적정한 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p>	<p>-육상동물상 및 조류상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여부 검토와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p>	
	<p>• 육상 동·식물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특정 생물상의 서식 및 행동권역 해당 여부 분석 등)제시</p>	<p>• 육상동·식물상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겠음.</p>	
	<p>• 포유류, 조류 및 장거리 이동성 철새의 도래 및 번식기를 고려한 현지조사 실시</p>	<p>• 포유류, 조류에 대해 현지조사(추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겠음.</p>	
	<p>•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공사 시행 계획(산란 및 번식기 공사 일시 중단 및 야간 공사 지양 등) 수립</p>	<p>•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p>	
	<p>• 공사 시 법정보호종 서식 확인에 따른 상세한 비상보전대책 수립 및 운영 시 장기 모니터링 실시계획 반영</p>	<p>•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법정보호종의 서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보전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겠음.</p>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낙동강 유역환경청	2. 대기질 ◦일 토공량 산정 -공사 시 토공량이 많이 발생하나 (180쪽) 일 토공량에 대한 산정 과정이 제시 되어 있지 않음. 일 토공량 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작업중단 일수(공휴일·우천·미세먼지 경보 등) 및 실제 공사기간을 고려한 실제 토공기간을 산출하여 대기질 예측을 하여야 함.	-대기질 분야 영향예측시 실질적인 작업일수를 고려한 토공기간을 산출하여 일 토공량 산정하여 적용하겠으며, 그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하겠음.	
	◦공사시 저감대책 강화 -서측 공업지역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제작장 운영, 준설토 매립 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방진망 설치 등)을 수립하여야 함.	-대기질 영향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용수 등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 운영시 선박·차량 및 발생 폐기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량 및 저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09. 개정)」 [붙임5]의 양식을 활용한 배출량 및 저감량 정리 필요	-관련 지침에 의거 공사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 및 운영시 선박·차량 및 발생 폐기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겠음.	
	3. 악취 ◦악취 대책 -준설토 매립으로 인한 악취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준설토는 사업지구 인근 기 개발된 투기장을 활용하여 매립할 계획으로 필요시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4. 수질(지표)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바(228쪽), 우수흐름을 토대로 적절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자료(규모, 위치, 처리구역 등)를 제시하여야 함.	-관련 지침에 의거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특성 및 배수유역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겠음.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낙동강 유역환경청	5. 해양환경 ◦잔차류 검증 -물질 확산 및 이동을 예측하기 위 해서는 잔차류의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조류 관측성과로부터 이를 검증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지구 인근에서 수행중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연속 조류 관측성과와 금회 수치실험의 잔차류 검증 결과를 제시하겠음.	
	◦해수 유동 실험 -본 사업으로 인한 해수 유동 변화 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강 유 속 분포도를 수치만이 아닌 백분율 (%)로도 제시하여야 함	-해수 유동의 변화를 변화 분포도와 변화 백분율로 제시하겠음.	
	◦퇴적물 이동 실험 -퇴적물 이동 실험의 입력자료를 관 측자료 및 기존 자료를 이용한 것 으로 제시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명 확하지 않은바, 검증에 이용한 자료 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퇴적물 이동 실험의 부유사 농도는 사업지구 인근에서 수행중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인용하였고, 부유사 농도 시계열 검증을 통해 실험의 신뢰도를 확보하겠음.	
	-퇴적물 이동 실험의 검증 결과를 연속부유사 농도 검증 시계열로 상 세히 제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연속 부유사 농도 관측 결과와 금회 수치실험의 부유사 농도 시계열 검증을 통해 퇴적물 이동 실험을 검증하겠음.	
	◦해양수질 및 퇴적물 현황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현지조사를 24년 10월과 12월에 계획하고 있는 바,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각 조사항목별 연도별 변화양상을 분석하여야 함.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4계절 조 사를 수행하였으며, 항목별 연도별 변화양상에 대해 검토 후 결과를 제시하겠음.	
	-본 사업지역 인근에서 그동안 많은 유사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 었음. 따라서 기존 사후모니터링 결 과를 토대로 사업지 주변의 해양환 경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지구 인근 지역에서 기 수행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와 금회 환경 현황 조사결과를 비교·검토하여 변 화추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겠음.	
	◦누적 영향평가 -본 사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울산 신항만 타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공사가 같은 기간에 이루어질 경우 누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타 사업중 부유사 발생하는 공정과 우리 사업의 부유사 발생 공정을 비교 검토하여 누적 영향평가를 실 시하겠음.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철재부두 운영시 타지역의 유사사 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근거 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철재부두 운영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근거한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울주군 환경기후과	<p>□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어업인들의 사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공사·운영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방지대책 및 주민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할 것을 권고함. ◦환경영향평가(초안)에 제시한 저감방안과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운영 시 실제된 영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해당 결과 또한 주민에게 공지되는 것이 사업 관련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주민 혹은 주민이 선임한 전문가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촌계 및 주민들과의 소통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음.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한 저감방안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을 작성하겠으며, 항목별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향후 운영단계에서는 협의내용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에 의거 그 결과를 매년 관할 환경유역청 및 승인기관에 제출할 계획으로, 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이 조사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음. ◦금회 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울산광역시	<p>□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72호, 2023. 4.13.)」 준수하여 성실히 작성해야 함. ◦본 건은 울산 주변지역 해상풍력사업 지원항만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울산항 주변 관련산업 유치 등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한 저감방안과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겠음.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한 저감방안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을 작성하였으며, 항목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이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서에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들의 경우 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하고 그 조치계획 및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제시하겠음. 	
□ 부서별 검토사항			
1.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사업 시 학술적, 문화적, 자연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이 발견될 시에는 사전 전문가 검토 및 보전대책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이 발견될 경우 사전 전문가 검토 및 보전대책을 수립 후 시행토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울산해안은 철새도래지에 해당하므로 공사 시 장비 또는 인공구조물 충돌 방지 등 조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사업의 공사시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상 평가항목의 경우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서식이 확인되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영향 저감대책 등을 필히 수립·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상 항목의 경우 현지 및 문헌 조사를 통하여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제시하겠으며, 필요시 서식지 보전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종과 서식지를 대상으로 생면존속, 서식활동(생식, 생장, 이동, 휴식, 은신 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생태계 훼손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년)'에 따라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사업진행 시 사업지구 인근지역에 생물종과 서식지를 대상으로 훼손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의거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승인기관은 사업의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제11호] 서식을 작성(사업자, 토지훼손면적, 용도지역 등)하여 우리시 환경정책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사업은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의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겠음.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울산광역시	<p>2. 환경대기과</p> <p>◦울산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함.</p>	<p>◦금회 사업시행시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함.</p>	
	<p>◦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및 공사현장 살수, 방진막 설치 등을 강구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함.</p>	<p>◦공사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세륜세차 시설 설치 및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p>	
	<p>◦「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가 공공수역(하천, 공공수로 등)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p>	<p>◦금회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립재로 사용되는 토사의 경우 호안 축조 공사 이후 매립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음.</p>	
	<p>◦아울러, 해당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의 설치 전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p>	<p>◦금회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선박 접안을 위한 계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입지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중이나, 향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이 입지하게 될 경우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음.</p>	
	<p>◦환경영향 조사 결과와 시설물 설치공사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계하여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및 수(水)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 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p>	<p>◦금회 사업시행에 따라 항목별 영향에 측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p>	

구분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울산광역시	<p>3. 맑은물정책과</p> <p>◦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계획을 마련하여 「물환경보전법」 제 5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낙동강 유역환경청장)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p> <p>◦항만 건설사업 전·후 비점오염원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염 저감방안 수립·시행하고 우리시 물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p> <p>◦각종 건설사업 등에 따라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홍수 유출량 증가, 하천 건천화, 지하수위 저하, 도심 열섬화 등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 변화로 인한 물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불투수면과 투수면을 연계하여 불투수면에서 유출된 우수가 투수면으로 침투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요망.</p>	<p>◦금회 사업시행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관련 법에 의거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음.</p> <p>◦금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저영향개발(LID)기법의 경우 도시지역에서의 물순환 기능 개선과 비점오염물질의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는 되는 것으로 금회 사업시행에 따른 비점오염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p>	
해양수산부 기술 (환경분야) 자문위원	<p>□ 총괄의견</p> <p>◦본 사업지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항만’ 및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악취관리지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등에 해당되어 대기질 관리가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다만 본 사업은 항만 계류시설(철재부두 1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기 및 악취배출시설 등이 입지하지 않아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본 안보고서 작성시 아래 내용을 추가 검토하고 대기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p> <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어 초안 의견수렴을 진행함에 따라 대기환경분야에 대해 중점 검토함.</p>	<p>◦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겠음.</p>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해양수산부 기술 (환경분야) 자문위원	<p>□ 세부검토의견</p> <p>◦육상로를 이용하여 외부 매립토사 반입시 덤프차량의 주요 이동로를 파악하고, 사업지구 및 이동로 주변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대기질 저감대책(공사차량 속도제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 및 방진막 설치 등) 수립이 필요함.</p> <p>-공사계획을 변경하여 준설토를 활용할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준설토 매립기간내 복합악취 조사 반영 필요</p> <p>◦본 사업지구 운영시 부지면적의 대부분을 야적장으로 활용함에 따라 야적장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야적장 외 대기(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 시설을 설치하려 경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고시(환경부 제2018-23호)'에 따른 내용 이행이 필요함.</p> <p>◦본 사업지구 운영시 철재부두 이용에 따른 선박 증가가 예상되므로 증가하는 예상 선박 대수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p> <p>-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에너지사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도 본안보고서에 포함</p>	<p>◦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속도제한,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p> <p>-준설토의 경우 사업지구 인근 투기장에 전량 매립할 계획임.</p> <p>◦사업지구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으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관련 법 및 관련 절차를 적법히 이행하겠음.</p> <p>◦향후 운영시 사업지구를 활용하는 선박대수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p> <p>-사업지구는 야적장 및 APRON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별도의 에너지 사용계획은 없으나 향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에너지사용 계획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겠음.</p>	
주민설명회	<p>◦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유사확산으로 지역주민 및 관계자(어업인, 상인 등)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 필요</p>	<p>◦환경영향평가서(초안) 부유사 확산 실험결과 부유사 농도 1ppm 기준으로 최대확산범위가 울산 남신항 항내로 국한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방안 시행 및 지역 어촌계 및 주민들과의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임.</p> <p>◦위와 별개로 추가 용역을 통하여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 및 평가한 후, 영향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겠음.</p>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주민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의 용도에 대한 설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사업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및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울산항 내에서 발생 또는 증가하고 있는 철재 및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울산 남신항 내에 철재부두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권은 왜 사업지구 경계를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에 있는 것만 제시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어업권의 현황을 제시하였음.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 사업 승인기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주관하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공개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착공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깨끗한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접수한 지역주민 및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공사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설명회 장소가 다소 사업지구와 거리가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다소 어려웠음. 향후 설명회가 있을시 사업지구 인근 면사무소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해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장소의 선정시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3곳을 선정(서생면, 온산읍, 온양읍)하여 초안 및 요약서를 비치하였음. ◦또한, 향후 추가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음.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신 울산항만공사사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결과 및 검토의견 통보[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1. 평소 환경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결과 및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1부. 끝.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주무관

신미리

환경관리팀장

김명자

환경기후과장

전결 11/18
최은정

협조자

시행 환경기후과-13565 (2024.11.18.) 접수 항만건설실-@N (2024. 11. 18.)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9층 환경기후과 / http://www.ulju.ulsan.kr

전화 052-204-2114 /전송 052-204-2119 / millhee@korea.kr / 비공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1)

-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및 검토의견

< 사업 개요 >

- 사업명: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 사업규모: 계류시설 290m, 공유수면 매립 74,600㎡
-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
- 사업시행자: 울산항만공사
- 승인기관/협의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 공람기간: 2024. 3. 21. ~ 2024. 5. 31.(49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024. 10. 31. ~ 2024. 11. 8. (7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후과,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 온양읍 행정복지센터
- 주민(단체)의견제출: 0명
- 공청회 개최 요구: 0명

검토의견

【울주군 환경기후과】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어업인들의 사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공사운영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방지대책 및 주민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할 것을 권고함
- 환경영향평가(초안)에 제시한 저감방안과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운영 시 실측된 영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해당 결과 또한 주민에게 공지되는 것이 사업 관련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주민 혹은 주민이 선임한 전문가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울산광역시】

I. 총 괄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72호, 2023. 4.13.)」 준수하여 성실히 작성해야 함.
- 본 건은 울산 주변지역 해상풍력사업 지원항만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여 울산항 주변 관련산업 유치 등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한 저감방안과 검토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이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서에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II. 부서별 검토사항

환경정책과

- 개발사업 시 학술적, 문화적, 자연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이 발견될 시에는 사전 전문가 검토 및 보전대책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
- 부산~울산해안은 철새도래지에 해당하므로 공사 시 장비 또는 인공구조물 충돌 방지 등 조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동·식물상 평가항목의 경우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서식이 확인되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영향 저감대책 등을 필히 수립·시행해야 함.
- 생물종과 서식을 대상으로 생명존속, 서식활동(생식, 생장, 이동, 휴식, 은신 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생태계훼손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 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년)'에 따라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승인기관은 사업의 승인일 부터 20일 이내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사업자, 토지 훼손면적, 용도지역 등)하여 우리시 환경정책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함.

환경대기과

- 울산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배출 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함.

-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및 공사현장 살수, 방진막 설치 등을 강구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여야 함.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가 공공수역(하천, 공공수로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아울러, 해당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의 설치 전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환경영향 조사 결과와 시설물 설치 공사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계하여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및 수(水)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 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맑은물정책과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계획을 마련하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항만 건설사업 전·후 비점오염원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염 저감방안 수립·시행하고 우리시 물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각종 건설사업 등에 따라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홍수 유출량 증가, 하천 건천화, 지하수위 저하, 도심 열섬화 등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 변화로 인한 물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불투수면과 투수면을 연계하여 불투수면에서 유출된 우수가 투수면으로 침투될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요망.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 사업 개요 >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 사업규모 : 계류시설 290m, 공유수면 매립 74,600㎡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울산항만공사/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비 : 약 726억원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나목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매립)

I. 총괄 의견

- 금회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신항 일원에 철재부두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아래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II. 세부 검토의견

1. 육상 동·식물상

- 육상 동·식물 현황조사 및 저감방안 수립
 - 본 사업지는 동계 조류 동시센서스 지역에 해당(53, 146쪽)됨에도 불구하고 동·식물상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환경현황조사 결과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솔개(Ⅱ급)가 확인(146쪽) 되었다는 단순 기술만 하고 있는바, 주요 동·식물 법정보호종 및 장거리 이동성 조류 등의 현황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적절한 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육상 동·식물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특정 생물상의 서식 및 행동권역 해당 여부 분석 등) 제시
- 포유류, 조류 및 장거리 이동성 철새의 도래 및 번식기를 고려한 현지조사 실시
-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공사 시행 계획(산란 및 번식기 공사 일시 중단 및 야간 공사 지양 등) 수립
- 공사 시 법정보호종 서식 확인에 따른 상세한 비상보전대책 수립 및 운영 시 장기 모니터링 실시계획 반영

2. 대기질 및 온실가스

○ 일 토공량 산정

- 공사 시 토공량이 많이 발생하나(180쪽) 일 토공량에 대한 산정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일 토공량 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작업중단 일수(공휴일·우천·미세먼지 경보 등) 및 실제 공사기간을 고려한 실제 토공기간을 산출하여 대기질 예측을 하여야 함

○ 공사 시 저감대책 강화

- 서측 공업지역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제작장 운영, 준설토 매립 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방진망 설치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용수 등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 운영 시 선박·차량 및 발생 폐기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량 및 저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09. 개정)」 [붙임5]의 양식을 활용한 배출량 및 저감량 정리 필요

3. 악취

○ 악취 대책

- 준설토 매립으로 인한 악취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4. 수질(지표)

○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

-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바(228쪽), 우수흐름을 토대로 적절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자료(규모, 위치, 처리구역 등)를 제시하여야 함

5. 해양환경

- 잔차류 검증
 - 물질 확산 및 이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잔차류의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조류 관측성과로부터 이를 검증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해수 유동 실험
 - 본 사업으로 인한 해수 유동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강 유속 분포도를 수치만이 아닌 백분율(%)로도 제시하여야 함
- 퇴적물 이동 실험
 - 퇴적물 이동 실험의 입력자료를 관측자료 및 기존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은바, 검증에 이용한 자료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퇴적물 이동 실험의 검증 결과를 연속부유사 농도 검증 시계열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해양수질 및 퇴적물 현황
 -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현지조사를 24년 10월과 12월에 계획하고 있는바,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각 조사항목별 연도별 변화양상을 분석하여야 함
 - 본 사업지역 인근에서 그동안 많은 유사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었음. 따라서 기존 사후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 주변의 해양환경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누적 영향평가
 - 본 사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울산신항만 타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공사가 같은 기간에 이루어질 경우 누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운영 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 철재부두 운영 시 타 지역의 유사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근거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끝.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

- 울산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공사 -

□ 총괄의견

- 본 사업지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취발성유기화합물 규제항만' 및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악취관리지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등에 해당되어 대기질 관리가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다만 본 사업은 항만 계류시설(철재부두 1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기 및 악취배출시설 등이 입지하지 않아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본안보고서 작성시 아래 내용을 추가 검토하고 대기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어 초안 의견 수렴을 진행함에 따라 대기환경분야에 대해 중점 검토함.

□ 세부검토의견

- 육상로를 이용하여 외부 매립토사 반입시 덤프차량의 주요 이동로를 파악하고, 사업지구 및 이동로 주변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대기질 저감대책(공사차량 속도제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문시설 및 방진막 설치 등) 수립이 필요함.
 - 공사 계획을 변경하여 준설토를 활용할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준설토 매립 기간내 복합악취 조사 반영 필요
- 본 사업지구 운영시 부지면적의 대부분을 야적장으로 활용함에 따라 야적장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야적장 외 대기(취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고시(환경부고시 제2018호-23호)'에 따른 내용 이행이 필요함.
- 본 사업지구 운영시 철재부두 이용에 따른 선박 증가가 예상되므로 증가하는 예상 선박 대수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도 본안보고서에 포함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 김 상 목

